

<2023년 자동차보험(대인) 기출 답안>

강사 윤성열

<문제1>

다음 사례에서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과 그 조사방법 및 보상처리 시 유의할 점을 기술하시오.<25점>

<모의고사2회 2번, 경상환자 4주 진단서제출의무화, 사고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로 학생들보다 실무자에게 조금 유리한 문제로 보이며 올해 출제된 문제 중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을 문제로 보입니다. 안심특강 및 문제풀이부터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답안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모범답안과 조금 달라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1.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

- (1) 쌍방 과실사고로 과실이 많은 보험사의 선 처리 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관계 검토
- (2) 경상환자 12 - 14급 경추 염좌로 인한 4주 이상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여부 검토
- (3) 무단운전사고 여부를 조사
- (4) 무면허 운전자 을에 대한 갑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여부에 따른 사고부담금과 구상여부
- (5) 동승 경위에 따른 동승자감액여부 및 피해자 측 과실 적용 여부
- (6) 정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

2. 손해사정사가 조사할 사항 및 보상처리 시 유의사항

(1) 사고부담금

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갑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여부에 따라 갑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을의 무면허 운전이 진행된 경위와 차량을 운전하게 된 상황들을 조사한다. 을의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일 경우 선 지급 후 을에게 구상한다. 갑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무면허 운전이 진행된 경우 연대하여 사고부담금을 구상한다.

(2) 무단운전 여부

만약 을과 병의 무단운전을 경우 병이 적극가담하고 종용한 경우라면 갑의 운행자책임은 발

생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1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무단운전 여부를 을과 병뿐만 아니라 갑과의 면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한다.

(3) 경상환자 진단서제출 의무화

병은 경추염좌 진단으로 자배법 상해급수 12급으로 경상환자에 해당된다. 개정된 약관을 기준으로 사고일로부터 4주간 치료가 가능하고 추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한방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과 함께 지불보증증시를 통보하고 추가 치료 시 진단서제출을 요청한다. 또한 경추염좌로 4주 이상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 사병(피병)증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4) 피해자 병에 대한 감액 또는 피해자 측 과실 적용여부

병에 경우 무면허운전자 을과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로 갑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라면 운행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고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경우 경상환자에 따른 대인배상2 치료비과실상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단순 동승한 경우라면 동승경위에 따른 동승자 감액여부만 검토한다.

(5) B보험사의 선 처리

B보험회사는 대인배상1,2가 가입된 보험으로 위 사례에서 선처리 후 A보험사와 갑,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구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 확보를 위한 조사도 진행한다.

(6) 정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경찰서에 신고 되어있는 상황이면 기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동선 및 주변 탐문, 주변 CCTV 및 확인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

3. A보험사의 보상책임

(1) 대인배상1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피보험자

갑은 기명피보험자, 을은 갑이 승낙한 경우 승낙피보험자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운전으로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3) 적용

병에게 갑의 책임에 따라 대인배상1 부책. 만약 병이 무단운전을 적극 적용하거나 가담한 경우라면 갑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면책.

(2) 사고부담금

을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부담금을 납부한다. 대인배상1 한도 내 전액. 갑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 연대하여 사고부담금 납부.

4. B보험회사의 보상책임

(1) 대인배상1,2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적용

정으로 병에 대하여 대인배상1,2를 보상한다.

(2) 사고부담금

음주운전으로 확인 될 경우 사고부담금을 납부한다.

<문제2>

과실상계의 법리와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의 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점>

<기본서 201P~203P, 모의고사 4회차 3번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과실상계와 약관의 과실상계 기준에 대하여 물어본 문제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잘 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부분도 있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과실상계의 법리를 작성하라고 했으니 과실상계의 의의뿐만 아니라 인정의 근거와 과실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의의

과실상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에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실상계의 인정근거

과실상계가 인정되는 근거는 손해의 공평분담에 있다. 즉 형평의 이념에 따라 민법에서는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763조에서는 “제 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소송 실무상 판사가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히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상고사유가 된다.

3. 과실의 의미

과실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결과임에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른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의 과실과 구분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는 요소로써 경도의 부주의를 의미하며 사리변식능력만 있으면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과실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의 과실을 의미한다.

4. 피해자 측 과실

피해자에게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적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피해자 측 과실이라고 한다.

피해자 측 과실에서 “피해자 측”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나 학설은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가 부모인 경우나 피용자가 운전 중 동승한 사용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감독의무자인 경우(유아, 정신이상자 등)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한다.

5. 과실상계의 조건

- (1)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에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 (2)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이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 (3)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6.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상계의 기준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문제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타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기본서 58P~65P, 파이널리뷰 약술 3번문제와 단기집중 모의고사 2번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이패스 수강생들은 쉽게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의미와 공동운행자, 공동운전자 중 타인으로 보호되는 경우와 친족의 타인성까지 작성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요

(1) 의의(개념)

자배법 3조의 배상의 객체는 사람, 타인이어야 한다. 자배법상 타인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 타인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

운행자 또는 운전자가 사상한 경우 타인이 아닌 이유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타인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 유형

(1) 공동운행자

1) 의의

하나의 자동차에 수인이 운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을 공동운행자라 한다.

2) 유형

전부적 공동운행자, 부분적 공동운행자, 절충적 공동운행자, 중첩적 공동운행자

3) 타인성 판단의 기준

사고당시 구체적인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사고 발생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 지배가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인 운행자는 운행지배가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인 운행자에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사용대차, 임대차계약에서의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임대인 임차인 모두 운행자일 때 임차인이 사상한 경우 일반적인 사용대차,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타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운전자를 함께 고용하여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운행지배보다 임대인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므로 임차인은 타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5) 단순 경비를 부담한 임차인

임차비용을 각출하여 분담한 일행은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6) 대리운전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량의 운전을 맡긴 경우 보유자는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인배상1의 성격상 소유자의 타인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배상1은 면책한다.

(2) 공동운전자

1) 의의

자배법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운전자라 한다.

2) 검토의 필요성

운전자는 자배법상 배상의 객체인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행자와 마찬가지로 수인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 운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

3) 교대운전자, 선의의 보조자 및 일시적 보조자

사고 당시에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 즉,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은 교대운전자나 선의의 보호자 및 일시적 보조자는 타인으로 보호한다.

(3) 친족의 타인성

자동차 보유자의 친족의 경우 타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판례와 실무는 친족의 타인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사안마다 다시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검토의 기준으로 타인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문제4>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무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별약관>에서의 ‘다른 자동차’를 각각 설명하시오.<10점>

<학습량이 많지 않은 수험생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로 약술집384P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약관에 규정된 무보험차, 다른 자동차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는 거의 모든 모의고사 사례(1회차사례, 2회차사례, 3회차사례, 5회차사례)에 포함되었고 실전모의고사 4회차 문제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1)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규정(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한다.

2) 무보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중 피보험자동차 및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다음의 자동차.

① 대인배상2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②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가 적용되는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단, ④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함)

2.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별약관

1) 약관규정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1 제외),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 다른 자동차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으로 승용자동차(다인승1,2종), 경, 3종, 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차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문제5>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너무 쉬운 사례가 나와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수험기간이 길지 않은 수험생들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로 사례문제가 아닌 취급업자의 책임 내지 특약위반의 예외사유(취급업자)와 같은 함정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별력을 갖추는데 훨씬 나아 보였는데 아쉽습니다. 기본서 51P~52P 사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1. 법률상배상책임의 검토

(1) 갑의 운행자책임

소유자 갑은 을(정비업체)에게 차량의 정비를 맡긴 후부터 운행지배가 단절되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의 운행자책임 및 사용자책임

을은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차량의 정비를 맡은 후부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로 자배법3조의 운행자책임을 진다. 또한 피용자 병의 민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책임도 발생하나 운행자책임이 우선 적용된다.

(3) 병의 일반불법행위책임

병은 자배법상 운전자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민법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한다.

2. A의 보험사의 보상책임

(1) 대인배상1,2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소유,사용,관리)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법률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피보험자

갑은 기명피보험자, 을은 승낙피보험자, 병은 운전피보험자다. 다만 대인배상2는 취급업자의 경우 피보험자에서 제외하므로 대인배상2는 을과 병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3) 적용

갑은 자배법상 책임뿐 아니라 민법상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에 의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을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존재하고 대인배상1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행인에 대하여 대인배상1만 부책임.

<문제6>

최근 도입된 ‘경상환자 대인배상2 치료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시오.

<모두가 예상하고 모두가 잘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문제로 출제될지 약술로 출제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모두 완벽하게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강의, 문제풀이는 물론이고 모의고사2회 5번 문제, 모의고사1회,3회,4회 계산에서 모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안심특강, 파이널리뷰에서 손해율을 개선, 선량한 계약자 보호, 보험료의 절감 등의 설명했는데 손해를 개선, 보험료절감 정도 작성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계산문제도 함께 출제되어 변별력을 조금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쉽게 출제되어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

1. 경상환자 대인배상2 치료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차량운전자가 12급 ~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는 과실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고 이륜차는 제외한다. 차량운전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도 포함한다.

2. 문제점과 개정취지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관하여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는 약관의 규정으로 손해율의 악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에 한하여 차대차 사고에 있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여 과실상계 후 초과액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차량운전자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개정하였다.

3. 기대효과

손해율 개선의 효과 그로 인하여 보험료의 인하, 선량한 계약자 보호

<무더위와 폭우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